성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주택 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수행을 위한 과표전담 기구가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여유기구설치운영)에 의거 현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 조직개편에 따른 중복(유사)담당부서 통폐합 및 기능쇠퇴 담당부서 폐지 등 부서별 업무를 신설 또는 조정코자 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과 신설 : 재난안전관리과

○ 과 명칭 변경 및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

• 한시기구인 "자치발전과"를 → "자치혁신과(여유기구)"로 전환

○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표담당)

○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제3조)

• 담당의 신설, 폐지, 통폐합, 분리에 따른 업무조정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사무의 신설

• 기타 불합리한 사무의 일부조정 및 정비

3 개정조례 "안" : 붙임

4. 신.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기구정원조정 계획

나. 정원 증원 승인관련 공문

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6조의2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5. 4. 19.~2005. 5. 9.(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공보, 군청홈페이지, 군·읍면게시판 등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건설과, 자치발전과" 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치혁신과(여유기구)" 로 하고, 동조 제2항제2호19목 내지 25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2호 제35목을 제36목으로 하고, 동항 제2호에 제35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동조 동항 제3호 제12목 중 "새마을 운동, 새마을사업 종합추진"을 "새마을 운동 및 국민운동지원"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제16목 내지 제26목을 각각 제18목 내지 제28목으로 하고, 제16목 및 제17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17) 광고물관리업무

동조 동항 제3호 제27목 내지 제30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3호 제31목을 제35목으로 하고 동항 제3호에 제31목 내지 제34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사회단체보조지원업무(총괄)

32) 성주군합창단 운영 및 관리

33)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34)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동조 동항 제4호 제16목 내지 25목을 각각 제17목 내지 26목으로 하고 동항 제4호에 제16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동조 동항 제9호 제1목을 삭제하고, 동항 제9호 제10목 중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면소재지 활력 증진사업"으로 하고, 동항 제9호 제11목 내지 제31목을 각각 제12목 내지 제32목으로 하고, 동항 제9호에 제11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동조 동항 제11호 제9목 내지 제20목 및 제32목 내지 제37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38목을 제40목으로 하며, 동항 제11호에 제38목 및 39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주민숙원사업 종합추진(시설물 포함)

39) 오지개발사업 추진

동조 동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재난안전관리과

1) 재난관리 기획운영 및 평가
2) 재난상황보고 체계구축 및 종합관리
3)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동원계획수립 운영
4)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5)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물 개발보급
6) 교량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7)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지도
8)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9) 재해 위험지역 조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10)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
11)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피해분석에 관한 사항
12)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13) 하천종합관리계획 수립
14) 하천감시 및 하천공사의 조사측량
15)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16) 국가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17)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18)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경보 발령
19)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20) 인력 장비 물자 등의 동원 명령
2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22) 종합자원봉사자관리(총괄)
23)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 육성(업무와 직접적인 관련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

24)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육성
25) 인력동원총괄계획 수립 시행
26)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2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2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29)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30) 방위지원본부 운영
31)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3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동조 동항 제13호중 "자치발전과"를 "자치혁신과(여유기구)"로 하며, 동항 제13호 제8목 및 제9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14목 중 "행정서비스헌장제, 광고물 관리업무"를 "행정서비스헌장제"로 하고, 제17목중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 업무지원"을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 업무지원 등 교육업무전반으로"로 하며, 동항 제13호에 제19목 내지 제21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업무추진 총괄
20)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 시책사업
21) 지역특구사업 등 신규시책 업무

제4장 제13조 제1호 제8목 내지 제10목을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728호(2003. 3. 6)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를 "2005. 5. 31 까지는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2005. 6. 1 부터는 여유기구로 전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조(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자치발전과를 둔다.	제3조(실·과의 설치)① …… …… …… …… 재난안전관리과, 자치혁신과(여유기구)를…….	○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 설치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2.총무과 1) ~ 18) (생략) 19)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20)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21)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22)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23) 방위지원본부 운영 24)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2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②(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1) ~18) (현행과 같음)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 조직개편에 따른 본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26) ~ 34) (생략)	26) ~ 34) (현행과 같음)	
〈신설〉	35) 국제교류,자치단체간 자매결연	○ 새마을과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를 총무과에 조정
35) (생략)	36) (종전 35목의 내용과 같음)	
3. (새마을과)	3. (현행과 같음)	
1) ~ 11) (생략)	1) ~11) (현행과 같음)	
12) 새마을운동,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12) 새마을 운동 및 국민운동지원	
13)~15) (생략)	13)~15) (현행과 같음)	
〈신설〉	16)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17) 광고물 관리업무	
16)~26) (생략)	18)~28) (종전16목~26목과 같음)	
27)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 육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단체는 해당부서에서 처리)	27) (삭제)	○ 새마을과 민간협력에 분장 되어 있는 자원봉사 등의 사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역협력담당에 조정
28) 종합자원봉사업무, 국민운동지원	28) (삭제)	
29)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29) (삭제)	
30) 지역자원봉사센터지원육성	30) (삭제)	
〈신설〉	31) (삭제)	
	31) 사회단체보조지원업무(총괄)	○ 문화예술회관에 분장 되어 있는 사무를 새마을과에 조정
	32) 성주군합창단 운영 및 관리	
	33)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34) 예술단체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31) (생략)	35) (종전 31목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4. (재무과) 1)~15) (생략) 〈신설〉 16)~25) (생략)	4. (현행과 같음) 1)~15) (현행과 같음) 16) 주택시가조사·산정업무 17)~26) (종전16목~25목과 같음)	○ 과표담당 신설 따른 주택 시가조사·산정업무 부여
9.(지역개발과) 1)오지종합개발사업 2)~9) (생략) 10)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신설〉 11)~31) (생략)	9. (현행과 같음) 1) (삭제) 2)~9) (현행과 같음) 10)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면소재지활력 증진사업 11)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12)~32) (종전11목~31목과 같음)	○ 본 업무 건설과로 조정 ○ 자치발전과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를 지역개발과에 조정
11. (건설과) 1)~8) (생략) 9) 재난관리 기획운영 및 평가 10) 재난상황보고 체계구축 및 종합관리 11)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동원계획수립 운영	11.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 건설과에 분장된 재난과련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조정

현 행	개 정 안	· 개정이유
12) 지역안전관련종합계획 수립시행	12) (삭제)	○ 건설과에 분장된 재난 과련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조정
13)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물 개발보급	13) (삭제)	
14) 교량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14) (삭제)	
15)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지도	15) (삭제)	
16)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16) (삭제)	
17) 재해 위험지역 조사 및 재해대책 본부 운영	17) (삭제)	
18)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18) (삭제)	
19) 하천감시 및 하천공사의 조사측량	19) (삭제)	
20)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20) (삭제)	
21)~31) (생략)	21)~31) (현행과 같음)	
32) 국가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32) (삭제)	
33)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33) (삭제)	
34)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경보 발령	34)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35)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 본부 구성운영	35) (삭제)	
36) 인력 장비 물자 등의 동원 명령	36) (삭제)	
37)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37) (삭제)	
〈신설〉	38) 주민숙원사업 종합추진(시설물 포함)	○ 새마을과 및 지역개발과에 분장된 재난과련 업무를 건설과에 조정
	39) 오지개발사업 추진	
38) (생략)	40) (종전 38목과 같음)	
〈신설〉	12.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분장
	1) 재난관리 기획운영 및 평가	
	2) 재난상황보고 체계구축 및 종합관리	
	3)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동원계획수립 운영	
	4)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5)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물 개발보급	
	6) 교량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7)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지도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8)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9) 재해 위험지역 조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10)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 11)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피해분석에 관한 사항 12)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13) 하천종합관리계획 수립 14) 하천감시 및 하천공사의 조사측량 15)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16) 국가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17)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18)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경보 발령	○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분장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19)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20) 인력 장비 물자 등의 동원 명령 2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22) 종합자원봉사자관리(총괄) 23)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 육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 24)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육성 25) 인력동원총괄계획 수립 시행 26)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2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2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29)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30) 방위지원본부 운영 31)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3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분장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12. (자치발전과)	13. 자치혁신과(여유기구)	○ 혁신업무 추진 원활을 기하기 위한 과 명칭 변경 및 여유가구로 전환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8)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8) (삭 제)	○ 본 업무 새마을과로 조정
9)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9) (삭 제)	○ 본 업무 지역개발과로 조정
10)~13) (생략)	10)~13) (현행과 같음)	
14) 행정서비스헌장제, 광고물관리업무	14) 행정서비스헌장제	○ 광고물업무 새마을과 조정
15)~16) (생략)	15)~16) (현행과 같음)	
17)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 업무 지원	17)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 업무 지원 등 교육업무 전반	
〈신설〉	19) 혁신·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추진 총괄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 신규사무 흡수
	20)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 시책사업	
	21) 지역특구사업 등 신규 시책업무	
제4장 사업소	제4장 사업소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 (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문화예술회관	1. (현행과 같음)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8) 성주군 합창단 운영 및 관리 9)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10) 예술단체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11) (생략) 2. 문화여성복지센터 1)~6) (생략)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기구 존속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2003.3.6. 조례 제1728호 부칙 제2항의 한시기구인 자치발전과를 여유기구인 자치혁신과로 한다.	○ 문화예술회관 자체시행 문화예술업무 외 새마을과로 조정